

여비 규정

여수시도시공사 개정 2015.6.8. 규정 제87호
제정 2017.11.17. 규정 제12호
개정 2018.1.4. 규정 제37호
개정 2021.5.28. 규정 제88호
개정 2022.1.17. 규정 제101호
개정 2022.12.9. 규정 제1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③ 출장 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출장지로의 이동과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비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근무지 내 출장이란 여수시 내 지역 출장을 말하며, 여수시 내에 위치한 섬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구분한다.

제7조(장기체재여비) ① 출장자가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②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여비의 조정) ①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의 출장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여비의 결제 및 정산) ①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출장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여비의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여비규정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 2018.1.4.>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21.5.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구 분	국내여비 지급기준	비 고
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의 ‘제1호’를 적용한다.	
직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구 분	국외여비 지급기준	비 고
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직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